

영등포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7. 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9. 6. 23.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제안) 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법률 제8014호)되어 2007.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금에 공휴일 할증을 신설하고, 지하층 청소요금에 대한 할증료를 지하4층 이하에서 지하2층 이하로 확대함(안 제7조)
-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고, 강제 징수할 수 있음(안 제9조)
-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청소과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의무를 신설함(안 제11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12조)
- 기타 인용법령, 용어, 조문 등을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함(안 제1조, 제3조부터 제8조 등)

■ 관련법규

-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등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 9. 28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기타 명칭을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2008.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된 바, 본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서 인용하고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수정의견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7. 2.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의 건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조례 제12조제5항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조례 제12조제5항 관련]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소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간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간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간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p>「하수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p>「하수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u>질서위반행위규제법</u>」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p>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수 신 : 발 신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기간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 사본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 발 신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

1. 「하수도법」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기간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 사본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 발 신 : 영 등 포 구 청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통보

1. 「하수도법」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통보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기간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이의신청 사본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끝.

관 련 법 령

하수도법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 (과태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분뇨수집·운반업)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